

2000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5.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2000. 5. 26
- 다. 상 정 일 자 : 2000. 5. 26(제8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김 재 월

나. 개정사유

-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 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호)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 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함(안 제6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함(안 제12조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99. 8. 9)되고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조례를 개정기 위한 것으로,

- 감량 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처리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방법중 탈수 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성 설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5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 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호)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처리 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 (안 제6조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수거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집, 운반도록 함 (안 제12조3항)

3.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 전라남도 환경 67500 - 2285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

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불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 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일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기

나 발효 또는 발효조건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지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지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히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청구비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제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지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제6조 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쓰레기 - 조리 전, 후 음식물 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붙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은박지, 패류껍질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 태 표 부 과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별지 제2호 서식>

감량 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자명 :

(단위 : kg)

년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 환용자	누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3호 서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 일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 처리	감량 처리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 리 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 우		위 탁 재 환 용 의 경 우				
	재활 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u>	<u>화순군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u>
	<u>위한조례</u>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u>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u> <u>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u>	1. - - - - - - - - - - <u>농 · 수 · 축산물류 쓰레기와</u> - - - - - - - - - -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u> <u>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u> <u>정한 사업장을 말한다.</u>	2. - - - - - - - - - - <u>-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 -</u> - - - - -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 물쓰레기를 <u>분쇄 · 압축에 의한 탈수</u> <u>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u> <u>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u> <u>·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 사료화 ·</u> <u>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u> <u>한다.</u>	3. - - - - - - - - <u>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u> <u>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u> <u>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u> <u>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활용이 용이</u> <u>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u>
4. ~ 5. (생략)	4. ~ 5. (생략)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 은 <u>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u> <u>처리하여 사료 · 퇴비 · 연료 등의 재활</u>	6. - - - - - - - - - - <u>- 사료 · 퇴비 · 연료등 으로 재활</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4조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의지정 등)</p> <p>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u>정할 수 있다.</u></p> <p><후단신설></p> <p>② 생략</p> <p>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u>생략</u></p>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u>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u>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u>날짜에</u>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4조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의지정 등)</p> <p>① - - - - - 정하고, <u>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u> 쓰레기수수료 <u>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u>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 <u>현행과 같음</u></p> <p>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u>현행과 같음</u></p> <p>1. - - - - - <u>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u> - - - - - <u>일시에</u> - - - - -</p> <p>2. <u>현행과 같음</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u>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u></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u></p> <p>2. <신설></p>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 - - - -</p> <p>- - - - -</p> <p>- - - - - <u>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u> - - - - -</p> <p>- - - - -</p> <p>- - - - -</p> <p>1. - - - - - <u>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2. <u>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3.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p>	<p>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 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p>
<p>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p>
<p>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 - - - - - - - - - -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u>최종 기재한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u></p>	<p><u>한다.</u></p> <p>2. - <u>2년간</u> -</p>
<p>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u>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u>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p>	<p>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u>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사업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u>법 제16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p>	<p>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 - - - <u>법 제12조의</u> - - - - - - - - - - <u>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족의 먹이 또는</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 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 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 축산기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p>	<p>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p> <p>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p>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 - - - -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으로 <u>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4조 (신설)</p>	<p>----- <u>자원화하는 시설을</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음식물쓰레기 <u>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u>) <u>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p>